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2
------------	-----

2009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5월 20일, 김정재 의원 외 9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
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양천구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동 법에 따라 최근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자전거 도난·분실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등록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도난 및 분실 자전거가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어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함으로써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함.

나. 주문

- 세계 많은 선진도시에서는 승용차이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교통문제 완화,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부수효과도 얻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교통시설 공급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자전거, 보행 등의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전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법은 자전거가 취급이 용이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도난발생이 빈번한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의 수거·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와 같이 자전거 등록을 구청장의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각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자전거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의 결과로 도난·분실된 자전거가 다른 구로 이동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함.

다. 이송처

-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 청와대, 행정안전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삭제 <200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권한의 위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현행과 같이 자전거 등록업무를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두고, 구청장의 위임으로 읍·면·동장이 등록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치구별로 상이한 자전거등록시스템을 갖게 되고,

도난·분실된 자전거가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경우 각 구별로 자전거등록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자전거 등록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도록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다만, 자전거 등록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더라도 인접 광역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현재와 동일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대로(교통운영담당관-5891) 중앙정부 차원의 “자전거등록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도난·분실된 자전거의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등록방식(차대번호 제작 방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2009년 1월말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천구청, 과천시청, 김해시청, 제주시청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2009. 1. 현재까지 등록된 자전거 수도 8,875대에 불과하여¹⁾ 자전거 등록제의 운영이 유명무실함을 고려하여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자치구별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

기관명	최초실시	등록현황(2009. 1. 31현재)					비고
		계	2009	2008	2007	2006까지	
계		8,875	42	2,180	48	6,605	
양천구청	'08. 3	2,070	40	2,030			
과천시청	'03. 10	339	-	-	-	339	'04년 이후없음
김해시청	'08. 4	37	-	37			
제주시청	'99. 1	6,429	2	113	48	6,26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pp. 25~2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882
----------	-----

발의년월일 : 2009년 5월 20일

발 의 자 : 김정재 의원 외 10인

1. 주 문

- 세계 많은 선진도시에서는 승용차이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로 교통문제 완화,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부수효과도 얻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교통시설 공급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자전거, 보행 등의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전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법은 자전거가 취급이 용이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도난발생이 빈번한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의 수거·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와 같이 자전거 등록을 구청장의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각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자전거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의 결과로 도난·분실된 자전거가 다른 구로 이동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찾지 못하게 되어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양천구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동 법에 따라 최근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자전거 도난·분실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등록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도난 및 분실 자전거가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어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함으로써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 나. 정부 :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우리나라는 대도시 승용차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자전거 도난 및 분실을 예방하고,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의 효과적인 수거·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치구간 자전거 등록 시스템의 공유 및 호환이 불가능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며, 도난 및 분실된 자전거가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상이하여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자전거 등록제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전거 도난 및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등록 업무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자치구별 자전거 등록 관련 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광역자치단체

장의 업무로 함으로써 자전거 등록 및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5.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